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29호
----------	-------

2017. 06. 22.(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윤은희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17년 06월 02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06월 09일

-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수행 기능 삭제(안 제6조)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안 제12조)

- 센터의 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안 제15조)
- 센터장이 담당하던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안 제17조)
- 부칙
 - 적용례 : 제12조제3항, 제15조제5항의 위탁기간 및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6조는,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영유아보육법」상 시장·군수의 위임사무인 제7호(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8호(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및 시장·군수의 위임사무이자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사무인 제9호(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

조례(제6조)	관계 법령
제7호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권한의 위임)</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u>시장·군수</u>·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제8호	<p>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p> <p>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p> <p>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p>
제9호	<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p> <p>② 특별자치도지사·<u>시장·군수</u>·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u>지방보육정책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p> <p>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p>

-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촉’ 을 ‘위촉 해제’ 로 변경 하고
 - 같은 조 제2호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적용에 있어 조문규정이 불명확한 바, 이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로 변경함. ※ 비위(非違) : 법에 어긋남

- 안 제12조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함)의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된 것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6. 8. 3.)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충북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의 위탁기간을 유지해 오고 있음.
-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위탁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였고, 업무 성격 상 복지시설과 위탁기간에 있어 차별을 둘 별도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3년 단위의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업무 집중의 어려움 등 운영 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안 제12조의 센터 위탁 기간과 안 제 15조의 센터장 임기를 5년 이내로 개정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2017년 보육사업 안내 (pp. 426 ~ 427)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또한, 안 제12조 제5항의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보고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18조에 따라 도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 시 센터 운영상황 등을 회의에 부치거나 보고토록 할 수 있는 바, 별도의 보고 의무 조항은 필요성이 미약하고, 다소 과한 규제라 판단됨. 따라서 제5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9. (생략)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17조는, 기존 센터장이 담당하던 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 센터의 운영계획, 주요업무 추진, 센터장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운영 투명성 및 외부 인사의 관심 및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선(互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타 지역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음.
- 안 제23조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유를 「영유아 보육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한 조건과 통일한 것임.
 - 현행 제1호의 “법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같은 호의 “보조 조건”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현행 제1호는 삭제하고 안 제4호에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칙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12조제3항의 위탁기간 및 제15조제5항의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나.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법리상 문제가 없으며,
-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한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30호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9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의자 : 윤은희, 이광희, 이양섭,
김영주, 박우양, 박종규,
최광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수행 기능 삭제(안 제6조)
- 나.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안 제12조)
- 다. 센터의 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안 제15조)
- 라. 센터장이 담당하던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안 제17조)
- 마. 부칙
 - 적용례 : 제12조제3항, 제15조제5항의 위탁기간 및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30호
-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함.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 을 “(위원의 위촉 해제)”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해촉” 을 “위원의 위촉을 해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제3항 중 “3년으로” 를 “5년 이내로”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5항 중 “3년으로” 를 “5년 이내로” 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센터의 장이 되며” 를 “위원 중에 호선하며” 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위탁기간 및 제15조제5항의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 략)</p> <p>7. <u>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u></p> <p>8. <u>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u></p> <p>9. <u>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u></p> <p>10. (생 략)</p>	<p>제6조(기능)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10.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u>위원을 해촉</u>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3. (생 략)</p>	<p>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 <u>위원의 위촉을 해제</u>-----.</p> <p>1. (현행과 같음)</p> <p>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3.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p> <p>① ~ ② (생 략)</p> <p>③ <u>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u></p> <p>④ (생 략)</p> <p>⑤ <u>센터의 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상황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5년 이내로</u>----- -----.</p> <p>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5조(구성) ① ~ ④ (생략)</p> <p>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u>3년</u>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15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5년 이내로</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운영위원회) ① ~ ④ (생략)</p> <p>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p> <p>⑥ ~ ⑧ (생략)</p>	<p>제17조(운영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위원 중에 호선하며</u>----- ----- -----.</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제23조(보조금의 반환) <u>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u></p> <p><u>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u></p> <p><u>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u></p> <p><u>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u></p> <p><u>4. 시설운영의 정지·취소,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u></p>	<p>제23조(보조금의 반환) <u>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u></p> <p><u>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u></p> <p><u>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u></p> <p><u>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u></p> <p><u>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관계법령 등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삭제 <2012.2.3.> ④ 삭제 <2012.2.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8.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5.9.18.>]

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 2017년 보육사업 안내(426 ~ 42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업무실적 등 평가 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가능